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0가단5104371(본소), 2021가단5281893(반소)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기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경호

피 고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애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7,9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2. 9.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원고에게 9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196,869,049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4, 5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9. 9.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9. 9. 5.부터 2019. 10. 27.까지, 공사대금 4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480,700,000원)으로 하되, 그 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9.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공사대금 480,700,000원 중 합계 382,200,000원을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직불합의는 원고가 피고 C이 무자력인데도 자력이 있다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2022. 6. 10.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직불합의를 취소한다.

②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들이 피고 C의 자력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2022. 7. 15.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직불합의를 취소한다.

③ 피고들은 무자력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전가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 체결을 종용하였는바, 이 사건 직불합의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0조가 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이 사건 직불합의 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은 실효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이 2019. 9. 4.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불합의가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모두 이유 없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의 변제 자력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 C의 변제 자력에 관한 신뢰가 원고의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동기를 피고들에게 표시하여 이 사건 직불합의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직불합의 후 피고 C의 변제 자력에 관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무자력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저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피고 C의 변제자력이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확보에 위험이 있다고 볼 정도로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C의 자력 상태가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직불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라는 점을 피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 C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무자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종용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직불합의가 원고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체결되었다거나, 우회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④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2019. 9. 6. 43,700,000원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2019. 9. 17. 87,400,000원, 2019. 9. 25. 43,700,000원, 2019. 10. 7. 2회에 걸쳐 각 43,700,000원, 2019. 12. 3. 100,000,000원, 2020. 2. 28. 20,000,000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 C이 2019. 9. 17. 피고 회사에게 87,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이 2019. 10. 4. 피고 회사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10. 7. 합계 8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2019. 10. 11. 및 2019. 10. 15. 피고 회사에게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2019. 9. 25.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43,700,000원에

가까운 금액인 점, 피고 C이 2019. 2. 27. 피고 회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불합의 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은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발주자인 피고 C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98,500,000원(= 480,700,000원 - 38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행기인 2019. 11. 11.의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결론

아래 3. 나. 1),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562,200원은 피고 C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상계 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87,937,800원(= 98,500,000원 - 10,5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2.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피고 C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 C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내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C에게 인도한 것이 2019. 9. 4.인데 피고 C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은 2021. 10.

15.이므로, 민법 제670조 소정의 제척기간(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실내건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1.부터 피고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제척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 본안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3,438,7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로 합계 10,562,2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0,56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 번	하자 항목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하자보수비(원)
가. 미시공 부분			
1	4층,5층 머신룸 인테리어 마감 누락	피고는 이 부분 마감공사에 대한 시공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0
나. 하자 부분			
1	4층 오피스 전 호실 인테리어 마감불량	하자로 인정함	1,153,900
2	4층 오피스 F호/G호 레벨단차 100이상 발생	레벨단차는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구배불량 인정되므로, 구비불량부위 표면 철거 후 구배조정비용 산정	459,800
3	4층 오피스 H호 환기구 불량	고정불량 하자로 인정함	90,200
4	4층 오피스 전면 호실 안내도 기재 착오	하자로 인정함	445,500
5	오피스 I호 시건장치 불량	하자로 인정함	122,100
6	4층 I호 바닥 에폭시 들뜸 및 양생불량	하자로 인정함	17,600
7	4층 I호~J호 인터넷 랜선 불량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0
8	4층 입구 계단 마감불량	하자로 인정함	20,900
9	4층 K호 바닥 불순물	하자로 인정함	99,000
10	4층 바닥 전 호실 크랙 발생 및 들뜸, 바닥 파손	하자로 인정함	1,431,100
11	5층 라운지 인포메이션 상부(누수)	하자로 인정함	434,500
12	5층 오피스 L호,M호 에폭시 바닥 들뜸 및 파손	하자로 인정함	1,032,900
13	5층 오피스 전 호실 천장 모서리 등 크랙 발생	하자로 인정함	922,900
14	5층 입구계단 마감 불량	하자로 인정함	20,900
15	5층 라운지 바닥 마감 크랙발생	하자로 인정함	74,800
16	5층 사용부분 크랙 발생	하자로 인정함	980,100
17	5층 라운지 소방전기 작동불량	하자로 인정함	228,800
18	4층,5층 전열 컨트롤러 화면장애	하자로 인정함	251,900

19	4층,5층 에어컨 개별시스템 불량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음	0
다. 마감손실 부분			
1	3층 상부 누수 피해	하자로 인정함	737,000
2	3층 라운지 사무실 상부 파이프 노출	하자로 인정함	1,491,600
3	3층 라운지 바닥 일부 및 좌우측 상부 마감	하자로 인정함	546,700
	합계		10,562,200

2) 특별손해(영업손실) 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사무실 임대를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바로 임대영업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손해로서 임대수익 상당의 영업손실금 276,930,349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3.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의 정도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임대영업을 전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C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임대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앞서 인정된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계항변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19. 11. 11. 이행기가 도래하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10,562,2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위 각 채권은 2019. 11. 11.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C의 2021. 10. 15.자 반소장 및 준비서면이 2021. 10.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87,937,800원(= 98,500,000원 - 10,562,200원)이 남게 되고,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장원지